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도입〉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8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7.
3. 회 부 일 : 2026.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 수익의 인출을 막거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
19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대부업등¹⁾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아예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채 사실상 대부업등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8조에 따른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²⁾가 대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 또한 지급정지가 된 계좌의 채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 그리고 지급정지가 된 계좌의 명의인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종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신설).

1) 대부업등 = 대부업 + 대부중개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9조(지급정지) ①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한 불법대부행위등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u> <u>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이용계좌의 명의인</u> <u>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절차·통지 등에</u>

<신 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9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신 설>

제21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 ①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방법·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 ~ 제21조 (생략)	제22조(지급정지의 종료)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좌가 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 제25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

제23조 ~ 제25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³⁾의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그리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에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거쳐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3) 「자본시장법」 제173조의2제2항(장내파생상품의 시세조종행위),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또는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를 위반한 행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

○ 「자본시장법」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금융위원회에게 지급정지 요구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⁵⁾⁶⁾.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견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

□ 그런데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행위 등 불법적인 대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근거는 있으나⁷⁾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및 피해 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불법적인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금을 조기에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먼저,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자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9조제1항은 지급정지 요청의 요건을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한” 불법대부행위등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19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한”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대부업법」 제9조의6은 해당 조에서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불법대부행위 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⁸⁾, 개정안에서는 “제19조⁹⁾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한 불법대부행위등 이용계좌”를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대부행위등의 의미가 불분명함.
- 나아가,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별도의 약칭 조치 없이 ‘제19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한 불법대부 행위등 이용계좌’를 “이용계좌”로 약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시적인 약칭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안 제19조제1항은 지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를 “지급 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외에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등”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9) 전술하였듯이 “제23조”로 정정 필요

□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급정지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실제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대부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자기 돈을 속아서 보낸’ 사실만 신고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불법사금융의 경우 「대부업법」 위반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확인된 후 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선의의 피해를 방지¹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제도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정지 요구권은 금융위원회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 요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를 위하여는 주무 행정관청인 금융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

10) 예컨대 금융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 없이 계좌가 손쉽게 지급정지될 경우,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허위로 불법대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대부업자 또는 사인의 계좌를 정지시키고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통칭 ‘통장협박’)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물론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가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될 여지도 있으나, 불법대부 관련 행위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하여 범죄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 주무관청을 경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고 신속한 지급정지 처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체납절차의 개시 및 질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대부 관련 별도의 피해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보전을 위한 각종 구제 절차들을 제한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오히려 미흡해지는 문제가 존재함.

○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마련된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제도에서도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 압류 등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계좌 정지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통상 90일 내)하고 있어 해당 계좌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 손해배상 등을 신청할 실익이 없는 보이스피싱에 반해, 불법사금융은 「대부업법」상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

등을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안 제20조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8